

## ■ EU, 폐기물 소각법 개정 합의

### ○ 대기오염물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배출제한기준을 강화함

-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설 시멘트 퀸터의 질소산화물 배출제한농도는  $500 \text{ mg/m}^3$ 로,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 $800 \text{ mg/m}^3$ 로 각각 강화됨
  - 그러나 ‘습식공정’에 따라 배출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소각로와 소형 퀸터에 대해서는 배출제한농도가 2008년까지  $1,200 \text{ mg/m}^3$ 로 적용됨
-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신규 지침이 적용되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퓨란의 배출량이 연간  $1,500 \text{ g}$ 에서 2005년에는 연간  $11 \text{ g}$ 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함
  - 같은 기간 동안에 카드뮴의 배출량은 6.3%로 감소하고 수은 역시 현재의 19.4%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
- 유럽의회가 다이옥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가 함유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온도를 기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<sup>1)</sup>을 철회함으로써 EU 정부와의 합의가 도출됨
  - EU 회원국 정부는 염소 함유 폐기물의 분리작업으로 인해 처리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과 특히 PVC<sup>2)</sup>가 우선적인 타겟이 될 것을 우려하였음

### ○ 새로운 폐기물 소각지침은 기존의 세 가지 지침을 대체하게 되며 유해 및 무해 폐기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

- 그렇지만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자체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펠프 및 제지산업체와 식품가공업체<sup>3)</sup>는 이러한 배출기준이 면제됨
- 배출감시 조건이 강화됨으로서 운영자는 모든 소각로에 대한 배출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함

### ○ 새로운 규정은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,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각각 적용될 전망임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

1) 다이옥신은  $640^\circ\text{C}$  정도에서 1초 정도 체류할 때 열분해가 시작되며 약  $740^\circ\text{C}$ 에서는 99.9% 이상이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각온도를 높이게 되면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됨

2) PVC (polyvinyl chloride)는 염소를 다량 함유한 화합물로서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짐

3) 그러나 식품안전을 고려해 식품폐기물을 가공공장 내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은 불허함